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 8. 7. 박용갑의원 등 17인

나. 회부일자: 2025. 8. 8.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 11. 17.) 상정 · 제안설
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3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5. 11. 18.)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
안반영폐기)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 11. 21.) 상정 · 소위심
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박용갑의원)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에 전기 · 가스 · 화재 · 풍수해 등으로 인한 안

전사고에 대비해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보수 등을 지원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5년 1월 22일 광주 양동전통시장 화재사고 당시 959개 점포에 화재감시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대구 서문시장 등 역시 화재사고 이후 화재감시시스템을 설치했으나 잦은 시스템 오작동으로 상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인 등의 의견 청취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안전시설물의 부설시공 시시정요구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통시장 등에 안전시설물등을 설치·개량·보수할 때 상인과 상인회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관계 법령상 기준에 적합한 안전시설물을 설치·개량·보수하도록 하며, 부설시공 등이 확인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20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성소미)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의 공동시설인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개량·보수하는 사업을 지원·보조하는 경우 상인 등의 의견을 들어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20조제6항).

개정안의 취지는 전통시장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개량·보수할 때 난연등급 이상의 성능을 갖춘 시설자재뿐만 아니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용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상인 등의 의견을 들어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전통시장의 화재안전 확보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상인 등의 의견을 듣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보수 사업계획에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인 등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도록 단서를 두고 있는데,

상인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개량·보수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의견 청취 절차를 의무화하는 규정과 그 예외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조문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그리고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시설물 점검 시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안 제20조의2제2항 신설), 점검 결과 부실시공 등이 확인된 경우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20조의2제3항 신설).

개정안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시설물에 대하여 ① 시설자재의 난연 성능 부합 여부, ②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여부, ③ 성실시공 및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 관계 법령 위반 및 부실시

공 등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면 철저한 사후점검을 통하여 안전시설물의 고장이나 오작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김원이 위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권칠승의원, 김위상의원, 김원이의원, 오세희의원, 장철민의원, 이종배의원, 위성곤의원, 이재관의원, 박용갑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1건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음.

대안의 주요내용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의 안전시설물 설치·개량·보수 사업을 지원·보조하는 경우 상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실시공 등이 확인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그리고 정부가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에 대해서도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또한,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상품권의 재사용·재판매 및 미등록 가맹점의 상품권 수취등을 금지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부당이득금의 3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6. 심사결과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대안반영폐기).